

「발전전략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1. 25. 제정 판 (시행 2016. 2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13/compare?from=762&to=127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6:4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<u>교목처장, 교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, 전인교육원장, 재무실장을</u>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(4), 직원(2)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<u>각처장, 총장특보</u> , <u>글로벌사회혁신원장, 재무처장을</u>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(4), 직원(2)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-03-07>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<u>둘 수 있다</u> . 1. 발전계획수립 2. 발전계획추진 3. 발전계획평가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제4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<u>둔다</u> . <개정 2022-03-07> 1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<u>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</u> . 2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<u>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</u> . 3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<u>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</u> .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 <개정 2022-03-07> 1.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<u>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</u> . 2.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<u>기획처장(위원장), 기획평가팀장(서기), 각 처장, 총장특보, 교육혁신원장, 국제교육원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생활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S/W융합교육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직원(1)으로 한다</u> . 3.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<u>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</u> .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발전전략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교목처장, 교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, 전인교육원장, 재무실장을"을 "각처장, 총장특보, 글로벌 사회혁신원장, 재무처장을"로 하고, "구성한다."를 "구성한다. <개정 2022-03-07>"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.

1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.
2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.
3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

1.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인 임명한다.
 2.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(위원장), 기획평가팀장(서기), 각 처장, 총장특보, 교육혁신원장, 국제교육원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생활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S/W융합교육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직원(1)으로 한다.
 3.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인 임명한다.
- 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